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137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서영석 · 강준현 · 이수진
정일영 · 김재원 · 김예지
한정애 · 이해식 · 윤준병
남인순 · 김태년 · 윤종균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물, 명예훼손 정보, 공포심 유발 정보, 범죄 교사·방조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그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및 영상 제작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그러한 행위를 미화하거나 모방을 부추기는 내용의 영상을 유통하여 유사한 행위가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효과적인 규제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현저히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장소의 평온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

제75조의2 전단 중 “제73조제7호의”를 “제73조제7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2의2. (생략)</p> <p><u><신설></u></p> <p>3. ~ 9. (생략)</p> <p>② ~ ⑥ (생략)</p> <p>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 <p>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p> <p>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p> <p>1. ~ 2의2. (현행과 같음)</p> <p>2의3. <u>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내용의 정보</u></p> <p>3.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74조(벌칙) ① ----- ----- -----.</p> |

1. ~ 3. (생략)

<신설>

4. ~ 7. (생략)

②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을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주변의 평온을 해치는 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유통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
----- 제73조제7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의-----

-----.